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8. 13 선고 2020가단7342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민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원

담당변호사 문상석

변 론 종 결 2021. 6. 25.

판 결 선 고 2021. 8.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2019. 1. 25.부터 2020. 3. 2.까지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금원에 관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667,51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와 형제관계로, 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D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C가 D 운영과 관련하여 자금난을 호소하자 사업자금 명목으로 2019. 1. 23.

10,000,000원 및 그 다음 날 4,000,000원, 합계 14,000,000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다. 한편, C는 피고와 2018년경부터 연인 사이로 지내면서 '여보', '당신'이라고 서로를 호칭하였고, 피고의 딸인 E과도 가족처럼 지내면서 2019. 1. 25.부터 2020. 3. 2.까지 사이에 별지 입금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11,667,515원을 입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입금내역'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는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입금내역과 같이 금전을 각 증여하여 은닉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각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11,667,5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이고, 근대 민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인적 집행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물적 집행만이 허용되는 관계로 모든 채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만족을 얻게 되므로 불성실하고 악의적인 채무자가 그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경우에 채권자보호를

위하여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유지보전할 수 있도록 채권자에게 인정된 권리이다. 그런데 이러한 채권자취소권이 행사되면 채권자의 재산권인 채권의 실효성은 확보될 수 있는 반면,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법률행위가 취소되고 수익자가 취득한 재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게 됨으로써 채무자 및 수익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내지 여기에서 파생되는 계약의 자유와 수익자의 재산권이 제한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헌법재판소 2006. 11. 30. 선고 2003헌바66, 2007. 10. 25. 선고 2005헌바96 참조). 따라서 채권자취소권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채권자의 책임재산보전의 필요성, 채무자 및 수익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채무자의 재산처분의 자유, 거래안전의 보호, 수익자의 재산권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채권자취소권제도의 취지와 사해행위 인정 여부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과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는 'F식당'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C가 운영하던 D의 직원들은 2018. 11.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던 식당에서 식사를 해왔던 점, ② C는 피고와 교제하면서 피고의 세금 또는 카드대금 등을 납부해주기도 한 점, ③ C는 2020. 4.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구속되기 전까지 매월 일정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던 점, ④ C가 구속된 이후에 피고는 C의 변호사선임비로

8,000,000원을 지출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가 연인으로 교제하던 피고에게 생활비 등을 보조하거나 C 운영의 D 직원들의 식사대금 명목으로 매달 일정한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바, 위 행위의 목적과 금전의 지급이 정기적이었던 점, 증여한 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숙희

<별지>

입금내역

거래일자	거래금액	수취원
2019-01-25	1,500,000	농협
2019-01-31	945,000	농협
2019-02-22	500,000	기업
2019-03-13	300,000	기업
2019-04-01	865,000	농협
2019-04-30	640,000	농협
2019-04-30	2,000,000	기업
2019-05-09	250,000	기업
2019-05-27	1,000,000	기업
2019-05-31	800,000	농협
2019-05-31	2,000,000	기업
2019-07-01	2,000,000	기업
2019-07-31	1,000,000	농협
2019-07-31	2,000,000	기업
2019-08-26	700,000	농협
2019-08-29	500,000	농협
2019-08-30	2,000,000	기업
2019-09-02	1,000,000	농협
2019-09-30	2,000,000	기업
2019-10-01	1,000,000	농협
2019-10-02	850,000	기업
2019-10-30	2,000,000	기업
2019-10-31	500,000	기업
2019-11-04	1,000,000	농협
2019-11-30	2,000,000	기업
2020-01-02	1,500,000	기업
2020-01-02	1,000,000	농협
2020-01-15	1,540,000	농협
2020-02-01	2,000,000	기업
2020-02-01	1,000,000	신협
2020-02-06	700,000	농협
2020-03-02	2,000,000	기업
2020-03-02	1,000,000	농협

